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ylinders for CNG Vehicle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 · 의결 : 2012년 5월 22일

지식경제부 승인 : 2012년 6월 26일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수 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오 신 규 :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당 연 직 김 인 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장
채 충 근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고압가스분야 김 진 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김 청 균 : 홍익대학교 교수
윤 기 봉 : 중앙대학교 교수
하 동 명 : 세명대학교 교수
김 창 기 :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문 규 : 에어프로덕츠크리아 부사장

액화석유가스분야 정 태 용 : 국민대학교 교수
안 병 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재 건 : 한성대학교 교수
백 종 배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장 석 용 : 에스이피엔씨(주) 회장
이 기 연 : 한국LPG산업협회 전무
장 기 연 : (주)귀뚜라미 이사

도시가스분야 김 광 섭 : 대륜 E&S 상무
오 신 규 : 한국가스공사 수석연구원
이 수 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고 재 욱 : 광운대학교 교수
문 일 : 연세대학교 교수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GS Code 제·개정 이력	
종목코드번호	KGS AC412 ²⁰¹²
코 드 명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개정 일자	내 용
2008.12.30	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79호)
2009. 5.1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3호)
2009. 6.29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50호)
2009.12. 2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54호)
2010. 1. 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80호)
2011. 1. 3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89호)
2011. 5.25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61호)
2011. 7.27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69호)
2012. 6.2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13호)
	- 이 하 여 백 -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기준의 효력	1
1.3 다른 기준의 인정	1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내용 없음)	1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1
1.4 용어정의(내용 없음)	2
1.5 기준의 준용	2
1.6 경과조치(내용 없음)	2
2. 제조시설기준	2
2.1 제조설비	2
2.2 검사설비	3
3. 제조기술기준	3
4. 검사기준(내용 없음)	3
부록 A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내용없음)	4
부록 B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 기준(내용없음)	4
부록 C 제조자 기록(내용없음)	4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ylinders for CNG Vehicle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전번호 제2012-3호, 2012년 5월 22일)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13호, 2012년 6월 26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내용 없음) <개정 12.6.26>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개정 12.6.26>

1.3.2.1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란 표 1.3.2.1에 따른 외국 용기의 인정기준을 말한다.

표 1.3.2.1 외국제품 제조등록 기준

인정기준	공인검사기관
ANSI	IIA(Independent Inspection Agency)
TPED(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ified Body)
고압가스보안법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1.3.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표 1.3.2.1의 인정기준으로 제조하고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1.4 용어정의(내용 없음) <개정 12.6.26>

1.5 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기 및 그 부속품의 모양·치수 등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6 경과조치(내용 없음) <개정 12.6.26>

2. 제조시설기준

2.1 제조설비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제조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제조하는 용기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라이너를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업소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와 (5) 중 쇼트브라스팅 설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단조설비 또는 성형설비
- (2) 아래부분접합설비(아래부분을 접합해 제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3)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열처리로 <개정 11.7.27>
 - (3-1) 용기를 가열하는 노안 각 부분의 온도차가 25℃ 이하가 되도록 한 구조의 것
 - (3-2) 노 안의 온도와 열처리 시간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가 있는 것
 - (3-3) 연속로의 경우에는 온도측정장치가, 담금질로의 온도유지구간 개시지점·중간지점·종료지점의 중앙 및 좌우에 각 1개씩 총 9개이상, 풀림로의 온도유지구간 개시지점·중간지점·종료지점의 좌우에 각 1개씩 총 6개 이상이 설치된 것 단속로의 경우에는 온도측정장치가 입·출구지점·중간지점·안쪽지점의 중앙 및 좌우에 각 1개씩 총 9개 이상이 설치된 것
- (4) 세척설비
- (5) 쇼트브라스팅 및 도장설비
- (6) 밸브탈·부착기
- (7) 용기내부건조설비 <개정 09.12.2>
- (8) 필라멘트와인딩 설비
- (9) 경화로 <개정 09.12.2>
- (10) 벙크링가공설비

- (11)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2.2 검사설비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제조하는 용기에 필요한 것만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 (1) 자동 압검사설비(용기마다 영구증가율 및 초단위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구조일 것) <개정 09.12.2>
- (2) 기밀검사설비
- (3) 초음파두께측정기 · 나사케이지 · 버어니어캘리퍼스 등 두께측정기
- (4) 저울
- (5) 초음파검사설비 및 최소 허용 결함 탐상용 표준용기(초음파검사설비는 회전과 병진운동을 하고 허용결함크기이상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을 것) <개정 09.12.2>
- (6) 자동경도측정설비(열처리 대상 용기 및 라이너에 대하여 열처리 적정성을 경도값에 의해 자동으로 측정되고 저장이 가능할 것) <개정 09.12.2>
- (7) 내부조명설비
- (8) 만능재료시험기
- (9) 충격시험설비(충격시험설비를 갖춘업소의 설비를 이용할 경우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9.12.2>
- (10) 화염시험설비
- (11) 낙하시험설비
- (12) 환경시험설비
- (13) 압력반복가압시험설비 <개정 09.12.2>
- (14) 표준이 되는 압력계
- (15) 표준이 되는 온도계
- (16) 그 밖에 용기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3. 제조기술기준 <개정 12.6.26>

제조기술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검사기준(내용 없음) <개정 12.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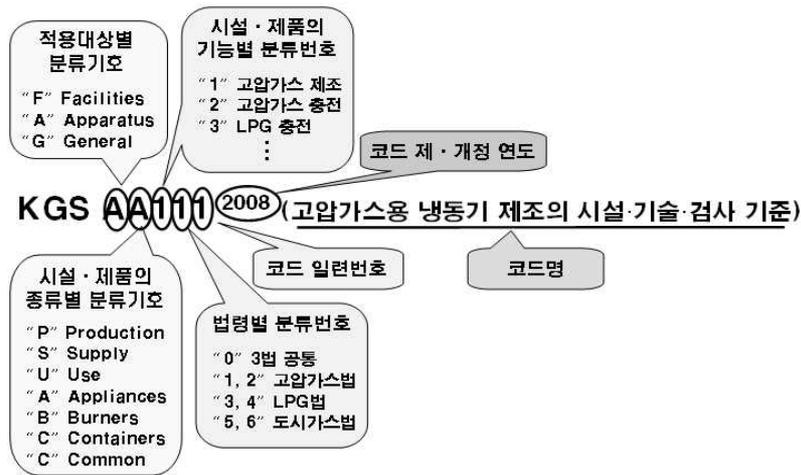
부록 A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내용없음) <개정 12.6.26>

부록 B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 기준(내용없음) <개정 12.6.26>

부록 C 제조자 기록(내용없음) <개정 12.6.26>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제품(A) (Apparatus)	기구(A) (Appliances)	AA1xx	시설(F) (Facilities)	제조·충전 (P) (Production)	FP1xx	고압가스 제조시설	
		AA2xx			FP2xx	고압가스 충전시설	
		AA3xx			FP3xx	LP가스 충전시설	
		AA4xx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AA5xx			FP5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AA6xx			FP6xx	도시가스 충전시설	
		AA9xx		기타 기구류	판매·공급 (S) (Supply)	FS1xx	고압가스 판매시설
	연소기(B) (Burners)	AB1xx		보일러류		FS2xx	LP가스 판매시설
		AB2xx		히터류		FS3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AB3xx		렌지류		FS4xx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AB9xx		기타 연소기류		FS5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용기(C) (Containers)	AC1xx		탱크류	저장·사용 (U) (Use)	FU1xx	고압가스 저장시설
		AC2xx		실린더류		FU2xx	고압가스 사용시설
		AC3xx		캔류		FU3xx	LP가스 저장시설
		AC4xx		복합재료 용기류		FU4xx	LP가스 사용시설
		AC9xx		기타 용기류		FU5xx	도시가스 사용시설
				일반(G) (General)	공통(C) (Common)	GC1xx	기본사항
						GC2xx	공통사항

